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500128

신 청 인1: 주식회사 한화(대표자: 박재홍, 최양수, 김연철)

2: 한화토탈 주식회사(김희철, 프란시스랏츠)

대리인 변호사 이은우, 장윤희, 강화연(법무법인 광장)

피신청인: 윤현준(Hyun Jun Yu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1: 주식회사 한화(대표자: 박재홍, 최양수, 김연철)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한화빌딩 24층

2: 한화토탈 주식회사(김희철, 프란시스랏츠)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독곶2로 103

대리인: 변호사 이은우, 장윤희, 강화연 (법무법인 광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피신청인: 윤현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분쟁 도메인이름은 “hanwhatotal.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메가존(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22 GALA 빌딩 7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5. 7. 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 7. 8.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5. 7. 9.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5. 7. 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5. 7. 15.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5. 8. 4.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5. 8. 4.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5. 8. 10.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덕재 위원을 단독행정패널위원으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5. 8. 10.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5. 8. 11.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1은 한국 10대 기업그룹집단인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국 법인이고, 신청인1을 포함한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Hanwha”, “한화” 또는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표장을 상표 및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삼성그룹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토탈 주식회사” 등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인수합의사실은 2014. 11. 25. 자정을 전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14. 11. 25.자에 등록하였는데 현재 까지 그 도메인이름에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 1의 상호 및 상표인 ‘한화’, ‘Hanwha’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과 미국에 상표등록도 되어 있으며, 동일·유사

한 명칭의 도메인이름도 다수 등록하였다. 신청인 2는 2015년 4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의 기업인수를 통해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된 ‘삼성토탈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한 것이며, ‘hanwhatotal’ 또는 ‘totalhanwha’를 포함하는 다수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삼성토탈 주식회사(신청인 2의 구 상호)’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피신청인은 그 다음날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속히 등록하였고, 등록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분쟁 도메인이름을 무단으로 선점하여 신청인들이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상호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1 또는 신청인 1이 지주회사격으로 있는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이 상표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고 저명성이 인정되는 상표 “Hanwha” 또는 “한화” 와 분쟁 도메인이름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소비자들은 “hanwhatotal” 을 저명상표 “hanwha” 에 “total” 을 결합한 것으로서, 그 웹사이트 운영주체를 신청인 1과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한화그룹의 계열회사로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 도메인이름은 그 등록 직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한화그룹 계열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한 “삼성토탈 주식회사” 인수 절차 완료 후 그 인수회사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었고, 실제로 인수절차 완료 후 2015. 4. 30. 변경한 신청인 2의 상호의 영문표기 “Hanwhatotal” 과 동일하다. 즉,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2의 상호의 핵심요부와 동일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anwha”는 신청인1과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명상표이다. 그리고 “hanwhatotal”은 신청인과 한화그룹 계열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한 “삼성토탈주식회사” 인수 절차 완료 후 그 인수회사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었고, 실제로 인수절차 완료 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2의 상호의 영문표기이다. 그런데 신청인 1의 상표 “hanwha”와 유사하고, 신청인의 2의 상호의 영문표기와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우연히 등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피신청인이 위 기업인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 신청에 대한 구제 형태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2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말소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2가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 사용하게 될 상호의 핵심요부를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선점한 것이고, 신청인 1과 2는 한화그룹의 계열사로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 2에게 이전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후에야 신청인 2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 신청인 2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 2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hanwhatotal.com>을 신청인 2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단독 행정패널

이덕재

결정일: 2015년 9월 9일